

사업비 편성 관련 안내문

번호	비목	편성 방법
1	인건비	- 50% 이내 편성 - 참여인력에 대한 세부 산출내역 증빙 필수 ※ 과대계상 및 산출내역 부족 시 조정 가능
2	사업재료비	- 재료는 실 구입원가로 산정 - 소프트웨어의 경우 사업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 ※ 관련 견적서 증빙 필수 ※ 1회 10,000천원 이상 장비 및 재료비 지출은 사전 협의 필수 ※ 실증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경비를 예산 산정하며, 범용성 자산은 불인정. .
3	사업활동비	- 사업 기간 내 드론에 대한 보험료 편성 가능 ※ 이행보증보험료 지출 불가(자부담으로 집행) - 회계수수료 편성 필수(500천원) ※ 회계정산비 외 실증과 직접적인 연관없는 예산(개발비, 홍보비, 회계정산비 등)은 지양 - 여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름 - 유류비는 장비 차량의 경우 실비 인정(단순 회사 차량 불인정) - 사업과 관련된 경비로 구성 - 식별장치 및 영상 송수신에 관련한 소모품비 산정 가능 ex) 통신비 (과제 기간 내 금액), LTE 라우터 등 ※ 발주기관 시스템 변경 시 기능 요구사항(붙임6)이 변동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장치 변경 필수. ※ 이외 표기되지 않은 사항은 배포한 「사업비 교육자료」와 「인천광역시 연구개발 활성화 사업」 연구개발비 세부 관리지침에 따름

※ 유의사항

- 본 과제는 실증사업으로 R&D성 예산 산정은 지양하며 실증 외에 개발비, 홍보비 등 산정시 평가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며 부득이하게 예산 산정 시 발주기관과 협의 필요
- 품의→지출결의→지출을 통한 집행 실시
- 품의/지출결의 시 활용 목적 및 용도 명기
 - 예: 출장명령서 없는 여비 지급 등(출장지 불분명 등)
- 사업 종료 시점에서 사업비 소진성 집행 자제
 - 예: 사업종료 마지막 달에 사무용품 및 기자재 일괄 구입 등
- 사업비 편성 내역은 인천광역시와 인천테크노파크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